

정책브리핑



정책브리핑 | 2023-13호 | 2023년 4월 21일 | 발행처 민주연구원 | 발행인 정태호 | idp.theminjoo.kr

경고등 커진 가계부채, 특단의 지원·감면·조정 프로그램 방안

남 국 현 연구위원(경제학 박사)

《 요약 》

■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현황

- 가계부채 총액은 22년 3분기 1,87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, 자영업자 대출은 1,014조원으로 연 14.3%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
 - 23년 1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,216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1.3% 증가로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이 한계에 도달

■ 가계부채의 영향 및 정부대책의 문제점
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소득 1분위가 4.2배, 고위험 가구 비율은 44.1%로 조사
 - 가계 및 자영업자 대출 모두 저소득층은 높은 금리로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고, 고소득층은 부채상환으로 원리금상환액 감소
- 정부의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 부재
 -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였고, 신용대출은 DSR 규제 외에 지원 대책 부재
-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채관리 정책의 실적 저조
 - 저금리 전환대출, 새출발기금 등 실적 저조, 가산금리 관리대책에도 실효성 미비

■ 정책제언

-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3조원 지원
-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사업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연계강화
-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 마련
- 코로나 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9조원 시행
- 코로나 한계차주 대환대출 40조원 시행
-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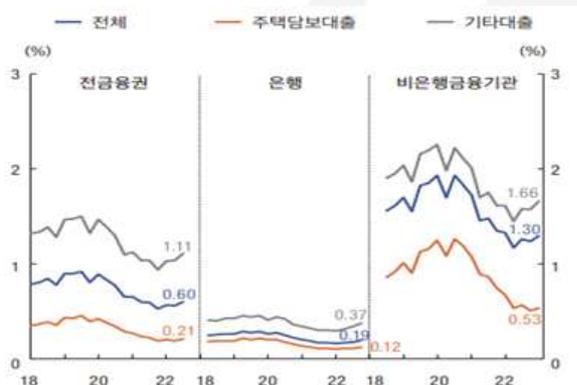
▶ 키워드: 가계부채, 자영업자 부채, 고위험가구, 취약차주

♣ 이 글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,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.

1.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현황

- 소득분위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위 4.2배, 2분위 2.8배로 저소득층이 높은 수준에 있고, 자영업자 부채는 1분위 6.2배, 2분위 3.2배로 더욱 위험한 수준에 있음
-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22년 3분기 1,871조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이며,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.6%로 세계 주요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음
 - 취약차주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56만 6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24조 6억원에 달하고, 2조 3천억원이 연체된 상태임
 - 17년 말 416만 6천명이던 다중채무자는 22년 6월 450만 9천명으로 8.2% 증가
 - 가계대출 증가율은 22년 2/4분기 10.6%에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22년 3/4분기 0.7%로 안정화되고 있으나,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됨
- 자영업자 대출은 22년 3분기 1,014조원으로 대출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연 14.3%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
 - 취약차주의 대출 증가율은 18.7%로 비취약차주 대출 증가율 13.8%에 비해 높은 수준임
 - 한국은행은 금리 및 성장률 충격 발생 시 비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.9%, 취약차주의 부실위험률은 16.8%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함
 - 3/4분기 자영업자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.3% 증가하였고, 20년 1/4분기 이후 증가율이 매분기 10% 이상을 나타내어 자영업자 대출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
 -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차주에게 최대 3년간의 만기연장, 최대 1년간의 상환유예하기로 결정했지만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위험을 해결하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함

<그림 1> 가계대출 연체율(단위: %)



자료: 한국은행

<그림 2> 개인회생 신청건수(단위: 건)



자료: 법원통계일보

○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가계대출 연체율

- <그림 1>에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 연체율은 22년 3분기 각각 0.12%, 0.37%로 조사
 - 비은행금융기관의 기타대출 연체율은 22년 3분기 1.66%로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높음

○ 개인회생 신청건수 증가

- <그림 2>를 보면 23년 1월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9.216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1.3% 증가
 - 22년 11월부터 개인회생 건수가 급증하여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이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

2.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 및 정부대책의 문제점

1) 가계부채 증가의 영향

○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
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2년 소득 1분위가 4.2배로 전년보다 상승
- 고위험가구는 22년 1분위가 44.1%로 가장 높고, 최근 금리인상으로 고위험 가구 증가
 - 22년 전국 고위험 가구수는 327만 가구(전국 가구수 대비 15.2%)로 추산
-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위험 가구 중 1분위 97.8% → 162.2%로 64.4%p 증가
 - 저소득층은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고, 고소득층은 부채상환으로 원리금상환액 감소

<표 1>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및 고위험가구 비율(단위: 만원, %)

구분	가처분소득	가계대출	가계대출/가처분소득		고위험가구* 비중		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			
			21년	22년	21년	22년	일반가구(부채있음)		고위험가구	
							21년	22년	21년	22년
1분위	1,191	4,958	4.0	4.2	45.8%	44.1%	47.1%	67.8%	97.8%	162.2%
2분위	2,591	7,194	2.8	2.8	32.5%	32.3%	36.8%	41.0%	92.3%	106.5%
3분위	4,187	10,216	2.4	2.4	25.6%	25.6%	32.4%	32.8%	94.2%	93.8%
4분위	6,326	13,753	2.2	2.2	22.7%	20.4%	32.9%	28.6%	107.4%	92.3%
5분위	11,576	24,831	2.2	2.1	19.2%	16.8%	29.4%	24.9%	107.7%	99.7%
전체	5,654	13,073	2.3	2.3	27.2%	26.0%	32.0%	29.7%	102.6%	100.5%

*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비율(DSR)이 40%를 초과하거나 자산대비 부채비율(DTA)이 100% 넘는 가구
 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(21, 22년)

○ 자영업자의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

-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2년 1분위 6.2배로 전년보다 가장 높게 상승
- 고위험가구는 22년 1분위가 45.6%로 가장 높고, 저소득 자영업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자금사정이 한계수준임
 - 22년 자영업자 고위험 가구수는 953천 가구(자영업자 전체 가구수 대비 20.0%)로 추산
- 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은 고위험 가구 중 1분위 109.9% → 167.5%로 57.6%p 증가
 - 저소득 자영업자는 원리금상환액이 높아지고, 고소득 자영업자는 부채상환으로 원리금상환액을 줄임

<표 2> 자영업자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및 고위험가구 비율(단위: 만원, 배)

구분	가처분소득	자영업자 대출	자영업자대출/가처분소득		고위험가구* 비중		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중			
			21년	22년	21년	22년	일반가구(부채있음)		고위험가구	
							21년	22년	21년	22년
1분위	1,217	7,584	5.3	6.2	44.8%	45.6%	51.5%	69.8%	109.9%	157.5%
2분위	2,605	8,358	3.4	3.2	34.7%	34.9%	39.0%	47.0%	92.9%	116.3%
3분위	4,150	11,744	2.9	2.8	28.9%	29.0%	37.3%	37.5%	104.3%	104.2%
4분위	6,350	16,119	2.6	2.5	29.9%	27.7%	40.8%	31.4%	109.8%	81.0%
5분위	12,106	31,502	2.6	2.6	27.7%	22.5%	40.4%	31.5%	113.9%	118.6%
전체	6,044	16,477	2.8	2.7	31.3%	29.5%	40.0%	34.4%	108.7%	105.0%

자료: 가계금융복지조사(21, 22년)

2)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의 문제점

○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대책 부재

- 주택담보대출 대책 위주로 정책을 시행하였고, 신용대출은 DSR 규제 외에 지원 대책 부재
 -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을 경감하려고 하였으나, 신청이 저조하여 대출 신청을 중단하였고, 이후 특례보금자리론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책임
 - 금리상승기 이자상환부담 증가로 상환애로를 겪는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을 대상으로 은행권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 추진정책도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에 해당
- 카드를 DSR 규제 대상에 포함하자 자금유통이 어려워진 취약차주의 리볼빙서비스 급증
 - 22년 리볼빙서비스는 7조 2천억 원으로 21년 대비 19.4% 증가

○ 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채관리 정책의 실적 저조

-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까지 은행권의 6.5%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시행하였으나, 실적이 저조
 - 정부 계획한 목표 금액에 미달한 5.3천억원이 신청되어 실적이 저조하였고, 금리가 높은 것이 원인
-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대상 장기분할상환, 금리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실적 저조
 - 30조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을 목표로 하였으나, 2조 5천억 원 매입으로 목표액의 8.5%로 실적부진
 - 감면율이 낮고, 분할변제 기간이 장기간이며, 신용정보로 등재되는 불이익이 실적부진의 원인

○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예대금리차 관리대책에도 실효성이 미비

-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는 22년 11월 1.35%p에서 12월 1.34%p로 소폭 하락하였지만, 23년 2월 1.63%p로 0.29%p 상승하여 정부의 예대금리 관리대책이 효과가 없음

3. 정책제언

1) 가계부채 대응방안

○ (이자감면)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3조원 지원

- 대부업·불법사금융 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(21년 7월)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·저소득 서민 대상으로 은행 등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및 지원
 - 연소득 4.5천만원 이하,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
 - 대출한도 2천만원, 금리 10% 초중반, 성실상환 시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인하
 - 전환 후 1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이후 원금·이자 분할상환 적용
- 총 3조원 대환대출 지원 시 특례보증 예산규모는 6천억원 추산(5배수)

○ (채무조정) 지자체 금융복지센터 사업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연계 강화

- 금융복지센터는 채무조정, 금융복지와 관련된 상담서비스 제공하며, 캠코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,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 등과 연계 강화
 - (채무상담) 개인파산 면책, 개인회생 등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 안내
 - (복지상담) 금융복지상담 외 사회복지서비스 및 취업관련 서비스 제공
 -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(13개소)는 연계사업으로 9,500명의 2.4조원 상당 재무를 면책 성공한 사례

○ (이자감면) 기준금리 인상시기 은행의 가산금리를 동결·인하하는 규제방안 마련

- 가산금리 기준 공개하고, 기준금리 인상 시 금융위원회가 가산금리 가이드라인 제시하고, 금융감독원과 모니터링 강화
 - 박주민의원 등 12인(22.7.13) 가산금리공개법 발의

○ (수수료 면제)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법안 마련

- 최근 대출이자 급등하는 시기에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갚거나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려는데,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 해당
-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수료, 위약금 등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 마련
 -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0조 4항에 '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' 중도상환 수수료를 허용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함(금융소비자 보호법 일부 개정)
- 정부는 5대 시중은행에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추진
 -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액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, 전체대상으로 면제하면 2,300억원으로 추정

○ (상환유예) 원금상환 유예 요구 법안 마련

-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하는 시기는 금융소비자에게 원금과 이자의 동시 상환은 부담이 되므로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안 마련
 - 가계부채 규모가 커서 원금상환이 부담이 되는 차주에게 원금상환 유예 선택권 부여

2) 자영업자 부채 대응방안

○ (이자감면) 코로나 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9조원 시행

- 코로나 이후 발생한 부채 600조원에 대한 이자에 3% 감면 프로그램 시행
 - 정부 재원으로 1.5%p 이자감면 지원하고, 금융기관은 1.5%p 추가 금리인하(가산금리 인하, 우대금리 확대)로 매칭 지원
 -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 부채는 가계대출(99.7조원), 자영업자·중소기업대출(494.2조원)으로 약 600조원 증가
- 코로나 이후 발생한 부채 600조원에 대한 이자에 3% 감면 프로그램 시행
 - 이자감면 프로그램은 정상채권의 부실화를 차단할 수 있는 사전적 금융대책으로 경영여력이 있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가 신속한 자금상황을 통해 부채부담 완화
 - 금융권의 이자수익(2021년 기준)은 40조원을 상회하여 사회적 책임 필요

○ (이자감면) 코로나 한계차주 대환대출 40조원 시행

- 전체 코로나 대출의 5%(40조원)에 대한 초저금리 대환대출로 전환
 - 신보출자(4조원) → 보증배수(10배) → 대환대출 여력 확보(40조원)
-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 7%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프로그램 진행
 - 개인사업자 최대 5천만원, 법인 소기업 최대 1억원까지 연 6.5%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시행

○ (고정비 감면) 고정비 상환 감면제도 도입을 통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

- 인건비, 임대료, 공과금 등 고정비에 대출금을 사용할 경우 상환면제
 - 지출 증빙이 가능한 고정비 부분을 상환금에서 감면
- 인건비, 임대료, 공과금 등 고정비에 대한 저금리 장기 분할납부 시행
 - 고정비에 대출금을 활용할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저금리 장기 분할납부 시행
- (대상) 코로나 기간 중 성실 상황 소상공인·자영업자 또는 19년 평균 매출 대비 22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
 - (산출) 약 100만개 × 600만원(평균 임대료 50만원 × 6개월분) = 3조원

○ (채무조정)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자영업자 대출의 취약차주 부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

- 한국은행은 22년 3분기 취약차주의 대출잔액을 97.4조원으로 조사하였고, 취약차주 부채에 대해 원금탕감, 최대 10~20년의 장기·분할 상환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
-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는 자영업자 부실채무가 감소하지 않고, 자영업자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 초래
 - 대출만기연장·원리금 상환유예 조치: 20.4.1일 ~ 20.9.30(최초) ~ 21.3.31(1차 연장) ~ 21.9.30(2차 연장) ~ 22.3.31(3차 연장) ~ 22.9.30(4차 연장)